

사회복지대학원 재활심리자격인증 지침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대학원의 재활상담전공 재학생에게 부여하는 재활심리 발달서비스전문가 자격인증(이하 '발달재활 자격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인증 필수 이수 과목) 재활심리 자격인증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아동의 이해(공통필수)
2. 재활심리현장실습(전공필수)
3. 재활상담(전공필수)
4.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재활(전공필수)
5. 이상심리학(전공선택)
6. 지역사회심리재활(전공선택)
7. 심리진단 및 평가(전공선택)
8. 재활심리세미나(전공선택)
9.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제3조(자격인증 응시자격) 재활심리 자격인증 응시자격은 5차 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제2조의 공통필수(1)과목과 전공필수(3)교과목, 전공선택(3)교과목 21학점 이상을 대학원에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자격인증 시험) ① 재활심리 자격인증 시험은 학기 중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는 재활심리 자격인증 시험 출제위원 1인을 선정하며 출제위원은 자격인증을 위한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한다.

③ 재활심리 자격인증 시험은 제2조의 이수과목을 통합하여 개관식 및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④ 재활심리 자격인증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재활심리 발달재활 자격증을 취득을 원하는 재학생은 총 120시간 이상,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시간 이상 포함하여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인증서 발급) 재활심리전공자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 요건을 갖춰 별지 1의 '재활심리현장실습확인서와 교과목 이수증명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 자격증발급을 신청 한다.

재활심리 현장실습확인서(자격신청시 필수)				
실 습 생 인적사항	학교/학과명			
	성 명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휴 대 전 화			
실습기관 관리요소	실습기관명			
	실습기관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 소	※ '도로명 주소' 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 습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__주)		
	실 습 시 간	총 _____시간 (주 40시간×__주)		
	실 습 내 용	※ 실습대상(장애유형), 실습목표, 실습 주요내용 등 명시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시간 이상 실습 포함 총 120시간)		
	실습지도자 성명		실습지도자 인정사항	자격사항 (※발급기관 함께 기입) 예) 한국재활심리사협회 재활심리사1급 제 00호 전공/최종 학위/출신학교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직 인)		
교육기관/담당교수(또는 학과장):				
대학(원)		학과	(서명 또는 인)	